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25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25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254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2544)

검 토 보 고

〈 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근거 마련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9.
3. 회부연월일 : 2025. 9.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의학교육·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

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의 근거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 사용방법 및 제한, 공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①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접수의 범위·절차·사용방법 및 제한,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네 개정안은 조문번호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검토함.

나. 검토의견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의대생 임상실습, 전공의 수련 등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지역의료 거점 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의 공급자, 의학교육과 연구기관, 지역거점 및 상급종합병원 역할 등 학문적·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과는 달리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워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의료이익	-55,249	-21,304	1,310	-349,255	-360,081	-392,561	-445,900	-902,632
	당기순이익	-43,795	1,611	-2,472	-165,631	294,264	120,041	-277,127	-530,425

주. 2020년~2022년은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으로 당기순이익 일시 증가

자료 : 교육부

- 또한, 사립대학병원은 현재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반해,²⁾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4년 1,591억 3,2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거뒀음.

국립대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3)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및 교육·연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 사용방법 및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참고로, 국립대학병원 등에서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부금품법」의 제외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12540호,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기부금품 접수의 경우에는 현재도 국립대학병원별 후원회 설립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받고 있으며,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4)에 따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라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⁵⁾

□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⁶⁾에는 「기부금품법」의 취지상 국가 등의 기부 모집 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강요로 민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제한하는 것인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강요 및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병원 등이 해당 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기부금품법」에서는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등 11개 법률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⁷⁾

「정치자금법」, 「보훈기금법」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만 두고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5)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2024년 기부금 수입은 서울대 436억, 경상대 31억, 충남대 17억, 부산대 17억으로 나타나고 있음.

6) 「기부금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서는 모집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모집 등의 범위·절차 등을 법률에 직접 규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법의 적용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재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의 모집허용 특례를 인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모집 허용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등의 우려가 있어 의료계 및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및 교육·연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8) 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원자력병원, 암센터 등